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 (제 회)	

스포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으로 규정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어 기획예산처 직제 제정 당시 다른 법령의 개정도 같이 추진하였으나,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정책위원회 정원을 25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장관만 포함하여 개정하였음.

이에 정책위원회의 정원을 25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에 재정경제부장관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정원 확대 및 위원에 재정경제부장관 추가(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 1)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2026.1.2. 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으로 규정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변동이 발생함.

- 2) 이에 현행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정원을 25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재정경제부장관을 추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00. ~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5명”을 “2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u>2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 ----- ----- ----- <u>26명</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
1. <u>교육부장관</u> ,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1. <u>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u> ----- ----- ----- ----- -----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3112